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2068호
2025년 4월 7일
월요일

규 칙

○ 규 칙 제 1167 호 남동구 꿈나무스포츠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체 육 진 흥 과 2

공 고

○ 공 고 제 738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4
○ 공 고 제 743 호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 공고	복 지 정 책 과	7
○ 공 고 제 745 호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총 무 과	10
○ 의회사무국 제 34 호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1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규 칙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4월 7일

남동구 규칙 제1167호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5만 원으로”를 “17만원 범위 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3만 원으로”를 “15만원 범위 내에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지도자 수당 지급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도자수당 조정(안 제4조)
 - 감독 : 1일 150,000원 → 1일 170,000원 범위 내
 - 코치 : 1일 130,000원 → 1일 150,000원 범위 내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73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4. 7.

남동구청장

1. 공 고 대 상 :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자 1인 (별첨)

2. 공 고 기 간 : 2025. 4. 7. ~ 2025. 4. 25.

3. 공시송달 내용

상기와 같이 귀하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개선명령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공고기간 게시기간 내에 원상복구 및 개선명령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절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고발 등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 032-453-28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원상복구 명령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인천84바9778	박*순	2025.01.23. / 2025.03.12.	제34조 위반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743호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 공고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위원의 공개)에 따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임명·위촉 위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7.

남 동 구 청 장

I. 남동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연번	이름	직위	소속	직책	비고
1	박종효	공동위원장	남동구청	구청장	
2	조대흥	공동위원장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3	김미애	위원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장	
4	노정희	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	회장	
5	정해윤	위원	남동구노인복지관	관장	
6	임경임	위원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7	김성학	위원	한사랑가정의원	원장	
8	이상혁	위원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장	회장	
9	김수연	위원	목민어린이집	원장	
10	김선아	위원	인천 YWCA	사무총장	
11	박철성	위원	인천하나센터	센터장	
12	백양숙	위원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13	현승구	위원	인천노인복지시설협회장	회장	
14	김석겸	위원	구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5	류호인	위원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6	손동훈	위원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17	최선미	위원	남부 어린이집	원장	
18	박혜선	위원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센터장	
19	고은희	위원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센터장	
20	권요섭	위원	만수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21	황금덕	위원	간석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2	전영희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지사	지사장	
23	진연화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남부권 주거복지 지사	지사장	
24	이우철	위원	남동구 약사회	회장	
25	권은주	위원	남동구 통장자유회	회장	
26	김인경	위원	인천남동지역자활센터	센터장	
27	강필모	위원	남동구청	복지국장	
28	이지영	위원	남동구청	보건소장	

Ⅱ. 남동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연번	이름	직위	소속	직책	비고
1	김미애	위원장	꿈사랑어린이집	원장	
2	박철성	위원	인천하나센터	센터장	
3	이재봉	위원	만수6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4	김선택	위원	인천남동지역자활센터	실장	
5	정은해	위원	만수종합사회복지관	팀장	
6	김선형	위원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과장	
7	최원정	위원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장	
8	박옥숙	위원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9	전주희	위원	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10	계효경	위원	서창꿈별어린이집	원장	
11	오상석	위원	지백프로	대표	
12	김근영	위원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팀장	
13	최종혜	위원	남동구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장	
14	김정엽	위원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15	김영우	위원	남동구청	사회보장과 기초생활팀장	
16	송동진	위원	남동구청	노인정책과 노인정책팀장	
17	이선미	위원	남동구청	장애인지원과 장애인시설팀장	
18	김문정	위원	남동구청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장	
19	이은숙	위원	남동구청	아동복지과 아이돌봄팀장	
20	임미정	위원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출산장려팀장	
21	박미숙	위원	남동구청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장	
22	우희정	위원	남동구청	치매정신건강과 정신건강팀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745호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3항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4.

남 동 구 청 장

1. 전자우편 주소 : aksf199@korea.kr
2. 접수기간 : 2025. 4. 4.(금) ~ 선거일 전 40일 까지

※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음.

신고·신청 마감일은 추후 공고되는 선거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34호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주민조례청구에 의해 발의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7.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안 제5조 및 제6조)
- 지원기준 및 지원 신청 등(안 제7조 및 제8조)
- 지원 중지(안 제9조)
-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4. 7. ~ 4. 1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

의안 번호	3088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7일

발 의 자 : 남동구의회의장

☐ 제안이유

- 남동구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안 제5조 및 제6조)
- 지원기준 및 지원 신청 등(안 제7조 및 제8조)
- 지원 중지(안 제9조)
-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제20조, 제26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전년도 실적
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4.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과 그 밖에 양육부담 가정으로 한다.

제7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신청 등) ① 제5조제1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동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9조(지원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① 구청장은 보호자,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등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매체로 남동구 구보 및 남동구 인터넷 누리집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아이돌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기준(제7조 관련)

구 분	본인부담금 지원율(구비)	비 고
첫째아	70%	
둘째아 이상	100%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

제7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기준

구 분	본인부담금 지원율(구비)	비 고
첫째아	70%	
둘째아 이상	100%	

2. 비용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

- 첫째아 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70%
- 둘째아 이상 지원금 : 본인부담금 100%

구분	사업량 (명)	월 평균 금액(원)		연간소요액(원)
		본인부담금	지원금	
합계	967			1,928,520,540
첫째아(70%)	485	195,630	136,941	796,996,620
둘째아 이상(100%)	482		195,630	1,131,523,920

※ 사업량 :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아동 수

※ 본인부담금(월 평균)

: 시간당 본인부담금 × 소득 유형에 따른 비율 × 월 이용시간 60H

$$= (\text{가형 } 1,826\text{원} \times 67\% + \text{나형 } 4,872\text{원} \times 25\% + \text{다형 } 8,526\text{원} \times 3\% + \text{라형 } 10,352\text{원} \times 2.5\% + \text{마형 } 12,180\text{원} \times 2.5\%)} \times 60\text{H} = 195,630\text{원}$$
나. 추계 결과

(단위:천 원)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구비100%)	13,563,865	1,928,521	2,507,077	2,757,785	3,033,563	3,336,919

☞ 2차년도 30%, 3차년도 이후 10% 증액(예정)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복지국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구 비)		1,928,521	2,507,077	2,757,785	3,033,563	3,336,919	13,563,865
재원 조달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보조 금	국비	-	-	-	-	-
		시비	-	-	-	-	-
	지방교부세		-	-	-	-	-
	조정교부금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지방세		-	-	-	-	-
	세외수입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참고자료]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